중앙기기센터 규정

제정 2004. 5. 2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기구는 상지대학교 부속 중앙기기센터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내 실험실습기자재의 효율적인 구매를 위한 심의와 공동기자재 관리 및 공동기자재를 이용한 자연과학 관련 교육의 제반업무를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여 교육 수준의 향상 및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앙기기센터의 제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중앙기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공동기자재의 품목 선정
2. 공동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
3. 단과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의 구입에 관한 조정
4. 본 중앙기기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2장 조직

제4조(임직원) ① 중앙기기센터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중임 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그 운영을 총괄한다.
③ 중앙기기센터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직원 또는 조교를 둔다.

제5조(임무) 본 중앙기기센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소장은 중앙기기센터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
2. 직원 또는 조교는 기기의 유지, 관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15명 이내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기획처장, 이공과대학장, 생명자원과학대학장, 한의과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각 단과대학 학장, 기획처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①운영위원회
1. 중앙기기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2. 공동기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
3. 단과대학에서 구매 신청한 실험·실습기자재의 실험실습설비기준 적합여부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4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②소위원회
1. 단과대학에서 구매 신청한 기자재의 사양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소집) 소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9조(회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재정

제10조(재원) 본 중앙기기센터의 운영재원은 교비예산 배정액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11조(회계절차 및 회계연도) 본 중앙기기센터의 회계절차 및 회계연도는 학교의 회계절차 및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410, 2004.5.27)
이 규정은 200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